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입점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점업체를 증대시키고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 범위 확대(안 제4조)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전문업체”를 “시 출연기관 또는 전문업체”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를 제5조로 한다.

제14조를 제6조로 한다.

제15조를 제7조로 한다.

제1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7조를 제9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입점심사”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점”을 “재입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4조(쇼핑몰 운영) ① (생략)</p> <p>② 시장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전문업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는 유통특작과에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u>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구미팜농</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말한다.</u>----- -----.</p> <p>5. (현행과 같음)</p> <p>제4조(쇼핑몰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시 출연기관 또는 전문업체</u>----- -----.</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특산물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쇼핑몰의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삭 제>

<삭 제>

위촉한다.

1. 유통담당 공무원

2. 구미팜정보화농업연구회 임
원 및 운영위원

3. 농·축·임산물, 가공상품 또
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삭 제>

<삭 제>

<삭 제>

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 업무담당자가 된다.

<삭 제>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3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생 략)

제6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② -----
----- 입점심사---

심의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입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 제20조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9조(입점의 취소 등) ① -----

----- 경우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

----- 재입점 -----

-----.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⑤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소 관 부 서		유통특작과
입 안 자	과 장	강 호 철
	팀 장	윤 지 연
	담 당 자	권 세 환 (480-5932)